

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  
발의자 : 김소희 · 박정하 · 최형두  
김기웅 · 성일종 · 최수진  
엄태영 · 백종현 · 추경호  
서일준 · 윤상현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 하지만,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,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.

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등학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,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.

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함. 따라서,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

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역의 학생수,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## 초 ·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 · 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) ① 지역의 학생수,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학교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4조의2(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)</u></p> <p><u>① 지역의 학생수,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학교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